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6961
----------	------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등 17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

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

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

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1)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부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 다수의 심각한 위법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3. 24. 발의되었고, 2023. 12. 28. 본회의에서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 5. 국무총리로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의결 직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여 권력 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는 2024. 2. 29.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시 2024. 9. 11. 일부 수정되어 발의되었으며, 2024. 9. 19.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

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권력분립원칙 위배, 명확성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10. 17. 발의되었으며, 2024. 11. 14.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1. 26. 국무총리로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표적수사·별건수사의 우려가 높으며, 사법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2. 7.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2) 채해병 특검법

2023. 7.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 국방부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윤석열 등의 지시에 의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수사 개입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이하 “채해병 특검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은 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9. 7. 발의되어, 2024. 5. 2.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은 2024. 5. 21.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2024. 5. 28.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2024. 5. 21. 국무총리로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두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5. 30. 발의되어, 2024. 7. 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7. 9. 국무총리로서 미국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을 대신하여 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7. 9.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7. 25.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9. 11. 발의되어, 2024. 9. 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나. 헌법 · 법률 위반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보는 예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의 경우 공정성이나 평등의 측면에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따른 헌법적 한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 · 수호의무에 반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관저공사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수사외압과 관련하여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소위 채 해병 특검법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였

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 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의 헌법적 한계와 법률안의 이해충돌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6건의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률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헌법을 왜곡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거부권행사를 의결해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

2.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가. 사실관계

(1)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대통령 윤석열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

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검토하고,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하달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

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위협하면서(계엄사령부 제5호),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재차 위협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

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 계엄군을 통해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하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려 시도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윤석열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

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 총기 등으로 무장한 대규모의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자신의 통제를 받는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2)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 - 비상계엄 선포시

피소추자는 2024. 12. 3. 20:40경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2024. 12. 3. 21:00경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다. 피소추자가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의 소집자,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24. 12. 11.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 받았다는 회신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포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3. 22:17 ~ 22:22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대접건실

다. 참석자 및 배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라. 안건명 : 비상계엄 선포안

마. 제안이유 :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제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4. 04:27 ~ 04:29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다. 참석자 및 배석자 :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라. 안건명 : 비상계엄 해제안

마. 제안이유 : 2024.12.4.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12.4. 04:30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

붙임 : (의안번호 제2123호) 비상계엄 해제안 1부

나. 헌법과 법률 위배

(1)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침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는 헌법 제88조 제3항,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없고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⑤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 특히 피소추자는 국회가 2024. 12. 4. 01:00경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건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피소추자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계엄선포와 해제에 관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위 행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 행위이다.

(2)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 12. 3. 22:30경 보다 약 2시간 전인 20:40경 이미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

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에 관해 피소추자에게 건의했고 피소추자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의하면 피소추자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내란행위의 지휘 내지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행위를 분담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영장없이 수색을 하는 등 그 권한을 마비시켜 내란행위를 하는데 일조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폭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회 직원을 폭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모하였

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행위이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 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의 관여 내지 묵인으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의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한 것은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이다.

가사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인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항). 피소추자는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앙행정관청이며 국무총리에 소속된 각 중앙행정관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일반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60-261).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무장 폭동의 내란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이고,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국무총리의 권한과 의무는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넘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를 포함하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 제2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같은 중앙행정관청들을 지휘, 감독하여(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내란 행위를 중단시키고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명이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인 경우에는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책임이 조각되지도 않는다.¹⁾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 및 무장 내란 폭동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대통령이 위반한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배에 책임이 있다. 또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1) 2024. 12. 7. 대통령 담화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 2358 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지탄과 하야 및 탄핵소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일임”한다고 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행정권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즉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의힘과 자신이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2) 2024. 12. 8.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는 후 피소추자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지고 ‘정국 안정 방안’등에 대하여 약 1시간 20분간 논의하였다.

피소추자는 그 다음 날인 2024. 12. 8.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

의힘 대표인 한동훈과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담화문을 발표한 후 피소추자가 이를 이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담화문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²⁾ 나아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자신과 국무총리의 주1회 이상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문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채질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일견 주어는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가 외교를 포함하는 국정을 책임지고 당은 국무총리와 협력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채질 것입니다.” 외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담화문 전체에 걸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담화문에 국무총리는 단 2번 나올 뿐이다. 첫 번째 문장은 위에서 본 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채질 것입니다.”이며, 두 번째 문장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이다.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이 공동으로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성숙한 자유민주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큼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포함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 치안 안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채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의 담화문 발표 후에 이루어진 피소추자의 담화문은 비상시국에서의 내각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

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한동훈이 발표한 담화문의 취지를 이어 받고 있다. 즉,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의 헌법과 법률 위반

피소추자는 담화문을 통하여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그의 담화문에서 주장한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무총리인 피소추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4. 12. 8.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4. 12. 14. 탄핵소추 의결 전이므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가. 사실관계

국회는 2024. 12.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된 특별검사가 12·3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 12. 11. 특검법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실과 그 명단을 보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4.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체하고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 언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26. 기준 13일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2. 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별도로 내란행위에 동조하거나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문언상 대통령의 의무이다. 특별검사의 취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의무로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수사대상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적어도 1~2일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이후 13일 이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법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이러한 의무 해태는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라는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을 두고 있으므로 권한대행자는 그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권한은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검법상 의무조항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소추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를 회피할 재량까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내란공범으로서 이해충돌 및 범인도피, 증거인멸

피소추자는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이나 방조를 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검찰, 경찰 등에 의한 수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의무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끌면서 의무를 해태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한편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란의 공범들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의 피의자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가.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은 2024. 8.경부터 수차례의 교섭과 협의 끝에 2024. 11. 29.경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당이 1명의 추천하기로 합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당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청문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회가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결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한편 국회가 2018. 10. 18.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3인은 2014. 10. 17.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2024. 12. 23., 2024. 12. 24. 양일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2024. 12. 24. 3인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에서 위 3인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추천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추천 의결을 하기도 전인 2024. 12. 24.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권한대행인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고, 심지어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위헌적인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않기로 입장 굳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3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실질적인 임명행위이나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명권에 재량이 없는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 실제로 2017. 3. 29. 당시 황교한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재판관 이선애를 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대행한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의 의무를 대행하는 않는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

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 제11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 역시 2.항과 같이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를 한 자이므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도 대통령과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가결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대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방치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한 군

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전 과정을 목격하고 조력하였다. 피소추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미대사, OECD 대표부 대사,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 많은 고위직 및 중요 기구들의 장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내란 사태 및 그에 형사처벌 과정을 목격하였다. 피소추자는 누구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험성과 쿠데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폭동이 위법, 무효이며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등 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모두 누렸던 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눈 앞에 목도하면서 이러한 쿠데타, 내란 행위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지휘하여야 할 자신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과 의무를 대통령의 개인 비서와 같은 수준으로 이행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이익을 위한 봉사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처럼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폭동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빠지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2024. 12. 14.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내란사태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런 행위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내란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막고 오히려 추가 위험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 혹은 재량이 없는 권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행할 책임이 있는 헌법상 권한 대행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이고 권한 대행 체제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사회, 문화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직무 해태는 우리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국민에게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종합하면,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그 배우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이해충돌이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제2인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탄핵소추와 형사소추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여당의 대표와 발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위배의 정도가 국무총리로서 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내란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아가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범위반은 국민이 국회를 통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행위다. 결국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가 국회의 동의를 통해 받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무총리의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III. 결론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책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

리를 임명한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 의무가 단지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개인 비서로서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국민으로부터 간접적 신임과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동시에 헌법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서 부과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과 의무는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거부 사유도 위헌적임)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위반을 방조한 책임,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 행위에 관여한 책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헌법질서를 훼손한 책임, 내란의 공범으로서 특별검사 임명절차의무를 해태하고 내란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책임, 헌법기

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책임 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통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연합뉴스, 2024. 1. 5. 자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2. 조선일보, 2024. 5. 21. 자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3. 서울신문, 2024. 7. 9. 자 <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野 "국민에 선전포고">
4. 뉴스핌, 2024. 10. 2. 자 <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24번째>
5. 매일경제, 2024. 10. 2. 자 <尹, 24번째 거부권 행사에...민주당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는 사태 올 것">
6. 조선비즈, 2024. 11. 26. 자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올해만 세 번째>
7. SBS, 2024. 12. 3. 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8. 연합뉴스, 2024. 12. 4. 자 <국회 "무장계엄군 280여명 경내진입...헬기 24회 동원, 담장 넘어"> 제하 기사

9. 채널A, 2024. 12. 4. 자 <야간투시경에 방탄복 ‘완전 무장’ 계엄
군>
10. JTBC, 2024. 12. 4. 자 <우 의장 “윤 대통령, 즉각 국무회의
소집해 계엄해제 공고하라”> 제하 기사
11. YTN, 2024. 12. 4. 자 <소총 든 계엄군과 대치한 시민들... 침
착함 유지>
12. JTBC, 2024. 12. 4. 자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선포
6시간 만> 제하 기사
13. OBS, 2024. 12. 4. 자 <[단독] 계엄 선포 직후 군 구치소 미결
수 이송 지휘 이행>
14. 경향신문, 2024. 12. 4. 자 <여권 수뇌부 만난 윤 “계엄은 야
당 폭거 탓...나도, 국방장관도 잘못 없다”>
15. 경향신문, 2024. 12. 4. 자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
령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제하 기사
16. 뉴시스, 2024. 12. 4. 자 <[일지]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
간 30여분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제하 기사
17. 뉴시스, 2024. 12. 4. 자 <우원식 “윤석열·김용현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 보내...해제 선언하라”> 제하 기사
18. 뉴시스, 2024. 12. 4. 자 <여, 비상계엄 해제에 18명 찬성표...
대다수는 국회 폐쇄에 당사로(종합)> 제하 기사

19. 노컷뉴스, 2024. 12. 4. 자 <[속보]尹 계엄선포 후 경찰청장·서울청장 모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20. 한겨레, 2024. 12. 4. 자 <이재명·박찬대·정청래·김민석...민주당 "계엄군 체포 대상 10여명">
21. 오마이뉴스, 2024. 12. 4. 자 <계엄군 몸으로 막은 시민들, 손가락 부러진 국회의원>
22. MBN, 2024. 12. 4. 자 <67세 우원식 국회의장도 '월담'...계엄 해제 위한 다급했던 상황>
23. 서울경제, 2024. 12. 5. 자 <그날 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점령...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
24. JTBC, 2024. 12. 5. 자 <[단독] "의원들 다 끌어내라는 임무"...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증언>
25. 경향신문, 2024. 12. 5. 자 <국회에서 계엄군 수갑·탄창 추정 물건 발견...야당 "국회의원 체포용">
26. 노컷뉴스, 2024. 12. 5. 자 <[단독]계엄군 전화받고 국회통제한 경찰...포고령 공문은 사후 수신>
27. MBC, 2024. 12. 6. 자 <'실탄' 채운 채..."의원들 방첩사로 끌고 갈 계획">
28. JTBC, 2024. 12. 6. 자 <[단독]"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신고했다"...국회 작전 1공수여단장 실명 인터뷰>

29. 채널A, 2024. 12. 6. 자 <[단독]윤 대통령, 보안폰으로 국정원 1차장에 전화…“썩 잡아들여”>
30. JTBC, 2024. 12. 6. 자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31. 한겨레, 2024. 12. 6. 자 <“윤, 707부대 ‘어디쯤이냐’ 직접 전화” 특전사령관 폭로>
32. JTBC, 2024. 12. 6. 자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도…‘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최소 5명 추정>
33. KBS, 2024. 12. 6. 자 <[단독] 표결 직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34. 뉴스타파, 2024. 12. 6. 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11인 확인…“정치적·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35. SBS, 2024. 12. 8. 자 < [단독] 선관위 급파된 방첩사 대령들…전산실 서버 촬영>
36. JTBC, 2024. 12. 8. 자 <[단독] 추미애, 계엄 준비 내부 문건 공개…“방첩사 대령 등 4명 깊이 관여”>
37. 한겨레, 2024. 12. 8. 자 <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38. 이데일리, 2024. 12. 8. 자 <추미애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여인형 지시 작성”>

39. 조선비즈, 2024. 12. 8. 자 <민변 “한덕수·한동훈, 국정 운영할 헌법적·법적 근거 없어”>
40. JTBC, 2024. 12. 9. 자 <[단독]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 계획”...특전사 간부 증언>
41. 중앙일보, 2024. 12. 9. 자 <[단독] 김용현이 들고 있던 ‘노란 봉투’, 계엄포고문 담겨 있었다>
42. YTN, 2024. 12. 9. 자 <[단독] 여인형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전화...상황 물어”>
43. TV조선, 2024. 12. 9. 자 <[단독] 계엄 직전 ‘상황관리 TF’ 준비 정황...“영남 출신 육사 장군 물색”>
44. 노컷뉴스, 2024. 12. 9. 자 <[칼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45. JTBC, 2024. 12. 10. 자 <[단독] “대통령,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곽종근 사령관 단독 인터뷰>
46. 서울신문, 2024. 12. 10. 자 <정치 불확실성이 끌어올린 환율... “연내 1500원대 뚫을 수도”>
47. 헤럴드경제, 2024. 12. 10. 자 <[속보] 계엄군 ‘서울의 밤’ 당시 민주당사 확보 명령 받아>
48. MBC, 2024. 12. 10. 자 <“체포한 뒤 수방사 B1 병커에 구금”...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

49. 서울신문, 2024. 12. 10. 자 <수방사령관 “국회 방어·보호 위해 병력 투입”>
50. JTBC, 2024. 12. 10. 자 <[단독] “집단사태·테러 땀 을호비상 발령”...방첩사, 경찰규칙도 만들었다>
51. SBS, 2024. 12. 10. 자 <[단독] “며칠 전부터 계엄 논의”...’윤, 내란 공범’ 적시>
52. 인사이드, 2024. 12. 10. 자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 호소하는 시민 증가... 전문가 “’집단 PTSD’ 가능성”>
53. 한겨레, 2024. 12. 10. 자 <[속보] “특전사령관, 12·3사태 이틀 전 계엄 알고 있었다”>
54. TV조선, 2024. 12. 10. 자 <[단독] “의사당에 3개 지역대, 의원 회관에 1개 지역대”...707단장, 계엄작전 메모 공개>
55. JTBC, 2024. 12. 10. 자 <[단독] “계엄군에 본청 유리문 등 파손”...12.3 계엄으로 국회 피해 6500만원 집계>
56. 중앙일보, 2024. 12. 10. 자 <김용현, 내란 혐의에 “위법 없었다...포고령은 尹과 상의해 작성”>
57. 한국일보, 2024. 12. 10. 자 <[단독]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58. JTBC, 2024. 12. 10. 자 <[단독] 방첩사, 계엄 당일 ‘수사경찰’ 요청...’전두환식 합수본’ 띄웠다>

59. 한국일보, 2024. 12. 11. 자 <[단독] 방첩사 "尹 경호하는 '868 부대', 중앙선관위 난입 계엄군에 동원했다">
60. 한국일보, 2024. 12. 11. 자 <계엄 국무회의 '위법' 인정한 한덕수 "실체적·절차적 하자 있었다">
61. 한국일보, 2024. 12. 11. 자 <'불법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었다>
62. 한국경제, 2024. 12. 11. 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발언 뒤 사라져">
63. SBS, 2024. 12. 11. 자 <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
64. 경향신문, 2024. 12. 11. 자 <총리 서명도 없이 5분 만에 끝...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 드러나>
65. 한겨레, 2024. 12. 12. 자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서명 절차 안 거쳤다"...뚜렷해지는 위법성>
66. 연합뉴스, 2024. 12. 13. 자 <한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67. 문화일보, 2024. 12. 12. 자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훼손여부 살핀다>
68. JTBC, 2024. 12. 12. 자 <[단독] 국무회의 참석 중기부 장관 "계엄공고문 못 봤다. 심의문서 사인도 안 해">

69. 세계일보, 2024. 12. 11. 자 <‘5분 회의’에 부서(副署)도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70. 중앙일보, 2024. 12. 12. 자 <“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위헌 여
지”…野, 대법원 답변 공개>
71. 문화일보, 2024. 12. 26. 자 <“김용현, 윤석열에 계엄건의전 한
덕수에게 사전보고했다”>
72. 제419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1호(202
4. 12. 11.)
73. 제419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3호(202
4. 12. 13.)
74. 제2회 국무회의(임시) 회의록(2024. 1. 5.)
75. 제22회 국무회의 회의록(2024. 5. 21.)
76. 제30회 국무회의 회의록(2024. 7. 9.)
77. 제42회 국무회의 회의록(2024. 9. 30.)
78.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2024. 11. 26.)
79. 헌법재판소 2004헌나1 결정문
80.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81. 헌법재판소 89헌마221 결정문
82. 한겨레, 2024. 12. 24. 자 <한덕수 “여야 타협부터”…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

83. 한겨레, 2024. 12. 24. 자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양기로 입장 굳혀”>